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 - 5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학교 진로활동실 설치 및 지원, 직업체험기관 지정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진로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전담교사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연수 제공 등 규정함(안 제13조)

사.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 6264, 팩스 032-440-87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김 종 인 의 원 대 표 발 의)

의안 번호	702
----------	-----

발의연월일 : 2016. 8. 9.

발 의 자 : 김종안·신은호·이강호·손철운 의원
(찬성자 5인)

1. 제안이유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학교 진로활동실 설치 및 지원, 직업체험기관 지정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진로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전담교사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연수 제공 등 규정함(안 제13조)

사.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확보 방안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진로활동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진로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둘 수 있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제9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5. 기초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진로교육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진로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협의회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협의안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진로교육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에게 진로교육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진로교육 설명회·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진로교육법 시행령 ○ 제4조(진로전담교사) ○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 제8조(진로체험지원) ☐ 진로교육법 시행 규칙 ○ 제2조(진로전담교사)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

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학교 진로활동실 구축비,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
교육지원센터 1개 및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10개 운영비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제5조,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진로활동실 구축비 : 1실 당 15,000천원
 - 2020년까지 5년간 연 20교씩 구축 목표
 - 2016년 현재 44% 진로활동실 구축 완료(중·고등학교 259교 중 115교 완료)
 - 2020년까지 195교 구축 예정(전체 해당교의 75% 구축 완료)
-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 연간 1센터 당 30,000천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1개 운영
 -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연계 10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나. 추계 결과

1)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진로활동실 구축비	18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센터운영비	92,46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계	272,46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 기준 단가의 변화에 따라 추계 결과 변경될 수 있음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진로활동실 구축

- 기간 : 2017년 ~ 2020년
- 구축비 : 15,000,000원 × 80교 = 1,200,000,000원
- 내역
 - 리모델링 비용 12,000,000원 × 80교 = 960,000,000원
 - 기자재 구입비 3,000,000원 × 80교 = 240,000,000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 기간 : 2017년 ~ 2020년
- 연간 운영비 : 30,000,000원 × 11개 센터 = 330,000,000원
- 내역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 인쇄비, 현수막 등

다.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진로교육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고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방법 논의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교육비특별회계	272,460	272,460	272,460	272,460	272,460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0	357,540	357,540	357,540	357,540	
계	272,46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사항

- 진로활동실 구축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협조 요청
-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협조 요청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육위원회 김 중 인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입	—	—	—	—	—	—	—
	소계						
세출	진로활동실 구축	18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80,000
	센터운영비	92,46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412,460
	소계	272,46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2,792,460
재원 조달		272,460	630,000	630,000	630,000	630,000	2,792,460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72,460	272,460	272,460	272,460	272,460	1,362,300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지방자치단체 일 반회계 전입금)			357,540	357,540	357,540	357,540	1,430,160